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 61 민사부

#### 판 결

사 건 2022가합564733 손해배상(지)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천  
담당변호사 김도년, 이명희, 정공진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10. 20.  
판 결 선 고 2024. 1.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설계, 판금설계, 어셈블리 모델링 등에 사용되는 설계 프로그램인 'C'(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반도체, LCD 장비 등 기계장비의 설계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 피고는 2019.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2018. 10. 26.경부터 2019. 1. 22.경까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고 총 32회에 걸쳐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9고약1244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 3개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원고는 저작재산권(복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명시적 일부청구).

####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프로그램은 모듈조합형 프로그램으로 피고는 구 버전을 다운받아 그중 일부 기능만을 사용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에 대한 전체 모듈 사용료를 전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원고는 2019. 3. 14.경 피고를 형사 고소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3. 판단

####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 침해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 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 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67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 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무관하게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늦어도 피고를 형사 고소한 2019. 3. 14.경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 등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비로소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프로그램에는 정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크랙 버전을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 해당 사용자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원고의 서버에 전송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크랙 정보에 따라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2019. 3. 14.경 인천연수경찰서에 저작권법위반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장에는 피고의 성명과 주소, 업체명 등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피의사실로는 '2018. 10. 26.부터 2019. 1. 22.까지 총 32회에 걸쳐 불법 복제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고 기재하여 범죄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며, 실제로 이는 피고에 대하여 최종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일치한다.

③ 2019. 4. 15. 피고가 운영하는 'D' 사업장에 대한 수색검증영장 집행이 이루어졌고, 수색검증결과 위 사업장에 있는 컴퓨터 3대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불법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④ 피고는 2019. 5. 7. 인천연수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저작권법위반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2019. 5. 8. 원고 측에 송치 전 사건처리결과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졌다.

⑤ 피고는 2019. 6. 26. 인천지방법원에 저작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원고 측은 2019. 8. 28. 위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였으며, 2019.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에 대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9고약12449).

⑥ 원고가 2019. 3. 14.경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가해자는 피고로 일관되게 특정되었고, 범죄사실 내용 역시 동일하였다. 심지어 피고는 수사과정에서 원고 측에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였는데 금액에 대한 입장 차이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여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⑦ 설령 수사 결과 실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람이 'D'에서 근무하던 직원 등으로 확인되더라도 피고는 위 업체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위 업체에서 기계장비의 설계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과 같은 3D 모델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위 업체의 규모 및 업무 구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는 위 업체 소속 직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제로 설치한 직원과 함께 저작권 침해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될 지위에 있었다.

⑧ 이 사건의 경우 시스템상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 여부가 자동으로 적발되기 때문에 침해행위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가 주로 문제될 뿐,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리적으로 복잡한 논증이 필요하다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될



필요가 있어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건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 역시 이 사건 프로그램의 크랙 정보 수집 시스템을 통하여 적발된 내역을 기초로 다수의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불법행위의 내용,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자신의 손해 및 가해자, 피고가 한 행위의 위법성 등을 파악하는 데 별도의 전문지식이나 자료가 필요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이 사건 소장은 원고가 피고를 형사 고소한 2019. 3. 14.경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22. 12. 1. 이 법원에 접수되었음은 기록상 및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sup>1)</sup>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세용

                 판사      김수현

1)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2. 9. 16. 피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하였으므로 민법 제174조,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2019. 3. 14.경으로부터 이미 3년이 도과한 후에 위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28

판사      최항선